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2차) 공고

지역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사업」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도내 혁신성장산업 집중육성을 위하여 연관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상용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사업내용

사업명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사업
사업내용	• 혁신성장산업 분야 도내기업의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유형	① 자유공모형 : 6대 혁신성장산업 분야 내 자유주제로 신청 ② 구매조건부 : 6대 혁신성장산업 분야 내 자유주제로 신청하되, 구매계약서 제출 필수 ③ 투자유치형 : 6대 혁신성장산업 분야 내 자유주제로 신청하되, 투자유치계약서 또는 MOU 제출 필수
지원분야	• 6대 혁신성장산업 분야
특이사항	• 과제당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관리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R&D지원팀

2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구 분	자유공모형	구매조건부	투자유치
개요	기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부터 지원금 이상의 구매확약서(P/O)를 받은 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지원	최근 3개년 이내 도내 자치단체와 투자유치 계약 또는 MOU실시 후 도내에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작성 방법	6대 혁신성장 산업 분야 내 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	6대 혁신성장 산업 분야 내 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구매확약서(지원금액 이상) 제출 필수	6대 혁신성장 산업 분야 내 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투자유치 계약서 또는 MOU 제출 필수
지원금액 (과제당)	90백만원 이내	110백만원 이내	11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2025.08.01. ~ 2026.05.31(10개월)		
신청자격	[[참고1]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참조]		
추진방식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기업 단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1) 기업주도 컨소시엄 방식 : 주관 (도내소재 기업, 연구전담부서 이상 보유) + 참여(도내 소재 기업, 도내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참여1 일 때, 도비지원금 비율은 주관 60% 이상, 참여 40% 이하 - 주관 + 참여1 + 참여2 일 때, 도비지원금 비율은 주관 40% 이상, 참여 각각 30% 이하 <p>2) 기업 단독 방식 : 주관 (신청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기업)</p> </div>		
도비지원준	총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기업주도 컨소시엄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단독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기술료 징수 (정액기술료)	<p style="text-align: center;">총 도비지원금의 10%(주관, 참여 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 대학, 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제외</p>		

※ 유형별 선정건수,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3

지원 분야

구분	지원 분야	
혁신 성장산업	·에너지신산업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 ESS 등
	·미래 수송·기계	• 자동차, 조선해양, 농건설기계·뿌리 등
	·첨단융복합소재	• 탄소, 섬유, 방사선, 전자소재·부품 등
	·라이프케어	• 제약, 뷰티, 의료기기 등
	·스마트 농생명	• 종자·미생물, 식품, 농자재·시스템, 동물사료·의약품 등
	·정보통신융합	• 콘텐츠, ICT·SW 등

4

신청자격 ※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

□ 주관기관 : 최초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이거나, 도내에 공장**,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5가지 요건중 1가지 이상 충족시 가능)

* 기업 단독 수행일 경우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소재한 기업만 가능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단, 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를 전북특별자치도내에 보유한 기업만 가능

□ 참여기관 : 최초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 기 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본사, 공장, 사업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

□ (자유공모형, 구매조건부 - 주관 및 참여) 신청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만 주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이 가능

* 개인사업자, 1년미만 창업기업도 포함

□ (구매조건부) 신청 조건 및 우대사항

- 구매조건부 신청 시 지원금 이상 금액의 구매확약서 필수 제출
- 구매확약서로 인정 가능한 증빙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 (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 (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 외국어로 된 구매확약서는 번역본 첨부
- 구매확약서 필수 기재사항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명기, 신청기업과 수요처간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제품 또는 기술 개발 담당자 지정여부,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

□ (투자유치형) 신청 조건

- 2022.01.01.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도내 기초지자체와 투자유치 계약 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도내에 이전 또는 설립한 기업

□ 우대 가점 사항(택 1)

- 2024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수혜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소 기업(종료 및 취소 기업 제외)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형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서비스 직접 수혜 기업 및 기술이전 받은 기업

5

지원제외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의 R&D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를 제한함
 - ①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돋움·도약·선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제외 (주관, 참여 모두 해당)
 - ② 본 사업으로 2015년 이후 3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선정지원받은 기업 지원제외 (졸업제 적용)
-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2023년~2024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CB, BW는 부채에서 제외) 이상인 경우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

[지원가능여부 예시]

구 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지원여부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A기업	49%	47%	300%	400%	X
B기업	55%	60%	550%	650%	X
C기업	20%	75%	600%	320%	O
D기업	100%	40%	400%	540%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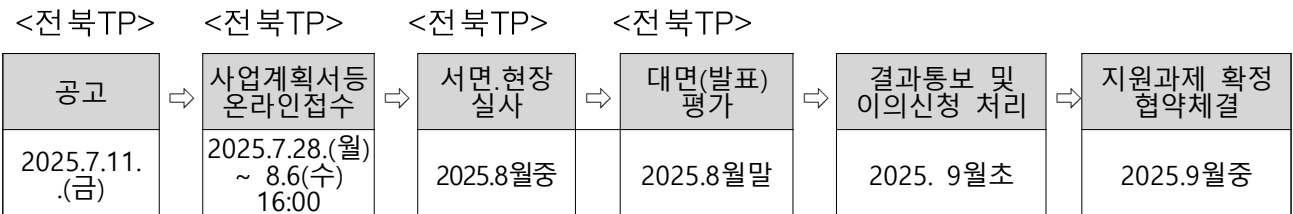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최초 공고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등기 임원 예외)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과제 3개, 연구개발과제 5개) 참여를 제한함(3책 5공 적용)
- 주관과 참여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공고상 명시된 필수서류 미제출 및 유효기간 만료 또는 비공인 자료 제출한 경우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 기준 / 제출 마감후 별도 서류보완 불가능**

6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7. 28(월) ~ 2025. 8. 6(수) 16: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홈페이지] 참조
 -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 지역R&D 공고에서 확인
- 제출시 각 파일별로 스캔(PDF파일 변환)하여 파일별 연번 및 파일명 기재 후 압축하여 온라인 접수시(<http://rnd.jbtp.or.kr>) 업로드
-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및 지정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탈락
- 모든 스캔 파일은 PDF로 통일함(JPG 등 기타 형식 불가)

No	제출서류	자유 공모형	구매 조건부	투자 유치형	비고
1	(양식 1) 사업계획서 2부(한글원본 1부, PDF 파일 1부)	○	○	○	주관
2	(양식 1-1) 붙임자료 각 1부(PDF파일)	○	○	○	주관 참여
3	최근 2년간('23~' 24) 표준 재무재표 각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국세청 발행 자료만 인정함	○	○	○	주관 참여
4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	주관 참여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내 서류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주관 참여
6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주관 참여
7	(구매조건부 신청시) 구매확약서***	-	○	-	주관
8	(투자유치형 신청시) 투자유치 확인서류 - 계약서 또는 MOU	-	-	○	주관
9	(단독신청시 필수)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 *도내에 연구소가 소재하여야 함 (참여기관 있을 경우)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설립예정일 경우 추후 제출)	○	○	○	주관
10	(가점대상) 가점 관련 사항 증빙자료 1부.	○	○	○	주관

* 표준재무제표는 홈텍스 발행 자료만 인정함

* 본사가 도외일 경우, 입주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구매확약서(P/O) 필수 기재사항 : 주문수량, 주문금액, 개발품목명, 계약기간(Delivery date) 등

□ 관련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R&D지원팀

(☎ 063-260-9331, 9336 / e-mail : khchae@jbtp.or.kr, tglee@jbtp.or.kr)

7

(도비) 지원금 지원기준 등

- 지원금은 참여기업 유무, 기업유형 등에 따라 사업비의 80%이내로 하고,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함 (단, 기업 단독의 경우 민감부담 현금 비율 20%이상)

※ (예시) 도지원금 100백만원(80%), 민간부담금 25백만원(20%)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은 25백만원의 10%인 2.5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현물 22.5백만원 이내)

8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기술성,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기여도 등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가지표
사업추진체계 (30)	추진체계의 적정성	-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연구역량	- 사전준비과정 적정성 - 핵심기술 보유 여부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능력 및 역량
기술성·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50)	기술개발 차별성	- 기술개발 내용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의 구체성 -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 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타당성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개발품목의 매출 등 사업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시장창출, 수출효과 등 파급 효과
기여도 (10)	지역기여도	- 지역산업(고용 및 매출액 등) 기여도
사업비 (10)	사업비편성	- 사업비 편성 적절성
가점(3)	우대가점 사항 참조	

9

추진절차

사업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재)전북테크노파크
과제 신청·접수	○ (재)전북테크노파크
서면·현장실사 및 대면 평가	○ 서면·현장실사(전북TP) ○ 평가위원회(전북TP)
협약체결	○ (재)전북테크노파크 ↔ 주관기관
사업수행·관리	○ 주관기관
진도보고 및 중간점검	○ (재)전북테크노파크
최종점검·최종평가	○ 평가위원회(전북TP)
사업비 정산	○ (재)전북테크노파크 [회계법인]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 (재)전북테크노파크

11

유의사항

- 신규고용 : 기업당 1명 이상 신규고용 의무
 - 최초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또는 사업기간내) 신규채용 연구원(재임사인원 제외)에 대해 주관기관 인건비 최대 247백만원이내로 사업비(현금)에 산정 가능
 - ※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 시 참여인력변경 보고를 한 경우만 인건비 지원 가능
 - ※ 학력제한 없음(단, 현금 인건비 지급 연구원일 경우,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노트에 성실히 기재해야 되며, 연구노트 불성실 작성 및 미작성시 인건비 전액 불인정)
 -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시 인건비 지급불가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은 1회에 한정함
 - 외국인 채용 : 주관 및 참여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참여인력으로 등재시 인건비 지급 불가. 단, 여비는 지급가능
- (공통)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현물 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현물은 인건비로만 책정하되, 비영리 참여기관은 현물 미책정 가능
-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하고 참여인력의 연구수행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지 연구노트 작성 확인예정










- 연구과제의 정량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생이 불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 설정 불가)
- '신규고용 의무조건' 불충족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
- 구매조건부 경우, 최종평가 이후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조사 시, 선정당시 제출한 구매확약서에 기재된 납품(계약)기한안에 매출성과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를 납부
 -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기술료 납부 통지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이미 개발된 R&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책임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제도를 폐지함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만 구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R&D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
- 제출시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 원본과 스캔본 2부를 업로드**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파일명을 자료명과 일치시키고 압축하여 업로드
- **온라인 제출 마감 후 수정 및 보완 불가함. 필수 서류 미제출 및 유효기간 종료, 비공인 서류 제출시 탈락**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참고 1] 사업 접수시 파일 정리 기준

 1. 사업계획서(기업명)	2025-03-07 오전 9:53	한컴오피스 한글 ...	38KB
 1. 사업계획서(기업명)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2. 불입자료(기업명)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3. 재무제표(기업명)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기업명)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명)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6. 4대보험가입증명서(기업명)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7. 구매조건부 신청시)구매약서(기업명)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8. (투자유치형 신청시) 투자유치 확인서...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9. (단독신청시)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10. (가점대상일경우) 가점관련 증빙자료...	2025-03-07 오전 10:21	PDF 파일	15,097KB

※ (유의사항)

1. 사업 접수시 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2. 사업계획서는 한글본과 스캔본 필히 2부 제출하여야 함(누락시 탈락)
3.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필수서류 제출시 제시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온라인으로 제출 마감일 이후 제출 완료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 및 수정 불가능함.
5. 필수 서류 미제출 및 유효기간 종료, 비공인 서류 제출시 탈락
6. 7번항목 부터는 해당 기업만 제출 하면 됨.

[참고 2] 사업비 편성 기준

세 목	내 용
인건비	<p>□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 본 R&D과제를 통해 최초 공고일 6개월 (2025.1.11. 이후 채용) 이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업당 현금 인건비 24.7백만원 이내 산정이 가능함(지원금 0.9억당 1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 인건비 한도 : 최대 24.7백만원 이내 ⇒ (기존인력) 인건비 한도 : 기업당 신규인력 인건비의 50% (신규인력 12.35백만원 + 기존인력 12.35백만원) ⇒ 신규 + 기존 인력 인건비의 지원금 한도는 24.7백만원을 넘을 수 없음(민간부담금은 추가 가능함) ⇒ 재입사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산정 불가함 ⇒ 선정 후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은 1회에 한정함 ⇒ 참여인력의 참여 여부 확인은 연구노트를 기준으로 하며 불성실 참여시 인건비 불인정 ⇒ 참여기관이 영리법인일 경우 인건비는 지원금의 20%한도로 책정 가능함 ○ 대학 및 출연연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 가능. 단,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한도 : 도지원금의 35% 이내 ○ 공통적용 :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 <p>□ 학생연구원 인건비 (도지원금 35%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연구원 인건비 : 참여율 100%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 3,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석사과정 : 2,2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학사과정 : 1,3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비 산정불가※범용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산정 불가 ○ 영리기관인 경우, 단일 물품(장비, 재료, 시제품 등)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장비, 시제품, 시료 또는 재료를

세 목	내 용
	<p>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협약 시 견적서 첨부 필요)</p> <p>* 사업 선정평가 이후 장비 구입비 편성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 및 재료 사용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구매예정내역 첨부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산정가능 <p>- 접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p>
연구활동비	<p>□ 연구활동비 (도지원금 10%이내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는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의해 산정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국외여비 불가) ○ 전문가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30만원/일 한도) - 자체 기준이 없을시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활용비 산정기준으로 지급 -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 ○ 위탁정산수수료 :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p>[별표]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 등 - 접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단순 문구 구입 금지) ○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세미나·문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는 불인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 ○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편성가능 - 식대 및 다과 : 30,000원 이내/인 X 참여인원 X 횟수

세 목	내 용
	-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 필수 첨부(회의록, 서명록) · (주관기관/참여기관)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산정불가
연구수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수당 편성불가 · 참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해당기관의 현금 인건비의 10% 이내 산정 가능
간접비	· 기관공동운영경비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 ⇒ 참여기관 도비지원금의 5% 이내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특허 출원 1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참여기관 사업비	·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금의 40%를 초과 할 수 없음

【별표】 정산수수료 표준 보수액

○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구 분(사업비 규모)	표준보수액(천원)
5천만원 미만	62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4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284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704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64
※VAT 포함 금액	

※ 사업비 규모의 산정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을 기준으로 함.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